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 사 보 고

1994. 12. 8.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1994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 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 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 합병으로 번지를 변경하며
-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증평도서관을 설립하며
-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74호 '94. 8. 3)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관 및 야영장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서관의 정기휴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번지중 "613 - 8"을 "38 - 6"으로 함 (안 별표 1)
- 증평도서관을 신설함 (안 별표1)
- 증원도서관의 위치중 "증원군"을 "충주시"로 함 (안 별표1)
-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별표1)의 위치난 중 "증원군"을 "충주시"로, "제천군"을 "제천시"로 함 (부칙안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합병으로 번지를 "613 - 8"에서 "38 - 6"으로 변경하며
-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증평도서관을 신설하고,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74호 ('94. 8. 3)에 의거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 중 "증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정기휴관일 관계는 주민의 이해와 공공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전입법예고 과정이 필요한데도 입법예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 "없음"

5. 토론 요지 :

도서관의 휴관일을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

6. 심사 결과

개정안 제8조 (휴관일)중 "정기휴관일"을 "휴관일"로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참석위원 6인 만장일치)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첨부 서류

- 수정조례안 1부
-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